

# 일반직원인사위원회 규정

- 제정 : 1999. 10. 1.
- 개정 : 2000. 3. 1.
- 개정 : 2006. 3. 1.
- 개정 : 2012. 6. 29.
- 개정 : 2013. 7. 12.
- 개정 : 2013. 10. 29.
- 개정 : 2017. 12. 28.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학교법인 고운학원 정관의 규정에 따라 총장의 지문에 응하기 위하여 수 원과학대학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.)에 설치하는 일반직원인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.)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조직)** ① 위원회의 위원은 총장이 위촉하는 7인 이내의 일반직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은 부서별 직원, 직급 및 성별의 비율 산정에 따라 총무처에서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한다.

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**제3조(위원장)**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.

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회무를 통리한다.

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4조(회의소집 등)**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5조(위원회의 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.

1. 직원의 신규채용, 승진 및 승급에 관한 사항

가. 근무성적 평정 및 담당 사무능력

나. 학생 생활지도와 관련한 능력

다. 건학이념의 구현 및 본교 발전에의 기여도

라.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직원으로서의 품위 유지

2. 법령, 정관 및 본교 제규정에 의하거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원인사에 관한 사항

제6조(회의록)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7조(간사) 이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, 간사는 총장이 임명한다.

제8조(세칙)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세칙은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이를 정한다.

## 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당시 본 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.

## 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 한다.

## 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